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0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90호, 2020.07.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됨에 따라 검사관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관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안 제15조)

: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 삭제

나.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안 별표6)

: 검사관 자격 기준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고졸학력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824, 3825(팩스 044-201-5582)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